

9. 建設技術管理法中 改正法律

法律 第5,287號 1997. 1. 13.

주 요 골 자

- 가.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기획·설계·계약·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·관리하는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법 제15조의 2).
- 나.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의 타당성,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, 미리 설계등 용역업자의 설계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(법 제23조 제1항).
- 다.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비를 절감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·건설자재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하고, 표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·생산업자 및 건설업자에게 시험생산·시험시공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(법 제23조의 3).
- 라.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철강구조물제작공장에 대한 공장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을 제작능력에 따라 등급화하도록 함(법 제24조의 3).

개 정 이 유

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정보전산망을 구축하고,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을 등급화하며, 설계·건설자재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 하는 한편,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